

'지적소유권'문제, 어디까지 왔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창립1주년 세미나 중계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지 1년,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6월 3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창립 1주년을 맞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張仁淑)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학계·언론계·출판계 인사와 관심 있는 일반인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통상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의 제 1주제는 「지적소유권 보호의 현황과 전망」(사회 이용권 문제 진흥원부원장)으로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의 법제 및 관행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를 점검해보자는 것이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송영식변호사는 우리의 지적소유권법은 86년 12월 31일 법 개정과 제정 및 그 후속조치로서 국제조약에의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었지만 최근 통상 상대국들이 우리의 지적소유권 보호 실태에 깊은 실망을 표시하고 무역장애가 일어나는 등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변호사는 지적소유권 법제는 법률상·기술상의 고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통상·산업정책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하며, 법제 정비와 함께 그 운용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보장됨으로써 '살아있는 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3차 산업 혁명기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선진국의 첨단 기술 수입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더욱 거세질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부딪치고 문제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양승두 연세대교수, 양순석 변리사)에서도 초점은 기술이전에 따른 선진국의 요구를 어떻게 조절·대처해나가느냐에 모아졌다. UN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건수의 94%가 선진국의 것이고 나머지 6%가 후진국·개발도상국의 것인데, 그 6%의 95%가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같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기술이전은 생존의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송변호사는 신흥공업국의 입장

에서 편협한 국수주의는 극히 위험한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지적소유권 법제를 일찍부터 완비해서 선진국으로부터 동등한 파트너 대우를 받음으로써 순조로운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었다는 흥미로운 선례가 제시되었다. 즉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대국의 요구에 마지 못해 따라

**우리의 지적소유권 법체계는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었지만, 실제 운용면에서는
아직 실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일반에 대한 홍보,
대학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대응 등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는 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임으로써 거시적으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교육 활발한 소련

제 2주제는 「저작권 영역의 국제적 추세」로서 李重漢 서울신문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朴椿浩 고려대교수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로 외국, 특히 미국과의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발달, 독서인구 증가 등으로 외국출판물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 출판물의 시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교수는 원래 외국과의 저작권 문제는 법적 문제이므로 외국의 저작권법 교육의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하겠다면서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먼저 아프리카·아랍지역. 경제나 문화발전이 아주 미흡한 이 지역은 저작권 연구나 법제에 대해서도 아주 초보적이다. 이들이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 식민지 시대를 오래 겪었으며, 둘째, 외국인이 문화유산을 많이 약탈해 갔는데 그걸 막지 못했고 세째, 국내에 남은 유산조차 보호를 못해 많이 파손됐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요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6월 30일 언론회관)

들어서야 자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눈을 뜯 실정이며, 우선 토착문화와 민속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은 앞서의 아프리카·아랍지역보다는 나은 형편으로, 우르과이 같은 나라는 특히 저작권법 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도 사실 스페인에게 문화재를 약탈당하면 서 자국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서구지역은 저작권교육에 있어서 당연히 가장 앞서 있다. 원래 지적소유권의 발상지이며 출판·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저작권법 연구나 교육에 있어서 영미법규와 유럽대륙법규가 약간 다르다.

마지막으로 소련지역. 이 나라는 개인의 창의성을 조장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소련헌법에 저작권이 자세히 명시돼 있으며, 교육도 여타 국가에 비해 훨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① 저작권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②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법률가들에 대한 교육 ③ 저작권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그것이다.

이처럼 국가적 정책의 하나로 저작권을 교육하고 있는 소련은 대학은 물론이고 중등교육과정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소송담당 법관마저도 전문지식 없어"

지역별로 저작권의 인식과 교육이 어느 수준인가를 정리한 박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승현 변호사, 안경환 서울대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먼저 대두된 문제는 국제사회의 질서는 결국 강대국 중심

의 질서가 될 수밖에 없고, 저작권조약 역시 아름다운 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사실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한 국제질서 속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저작권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없다는 심각한 상황이 논의되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처방으로 단기연수를 비롯한 비정규적 교육, 저작권을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 및 해외연수 등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되었고, 사법시험제도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 법과대학의 고질적 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론적으로 새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상당한 '인식의 개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하다는 데 참석자의 의견은 모아졌다. 이것을 이중한논설 위원은 "실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못하고 여전히 문제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오리엔테이션의 수준"이라고 표현했고, 한승현변호사는 "고대와 현대가 평화공존하고 있는 시기"라고 규정하였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준법도가 약한 틈을 타 일부 사람들은 자기이익을 위해 기발한 이론을 창출하는가 하면, 국민감정을 빙자해서 불법 복제를 정당화하려는 사회풍조에 대해서도 일침이 가하였다.

이왕 새로운 질서와 부딪친 이상 좀 더 당당히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가려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한 참석자의 발언은 앞으로의 방향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경구'로 받아들여졌다.

—남진우 기자